

2022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세부기준 변경사항

(’21.9.6기준)

□ 경 위

- 지난 ’20.12월 개정 고시*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의 세부 평가기준 마련 등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98호(’21.1.1.시행)

□ 세부기준 요약

평가분야		변경내용 및 사유
가점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점 상향 (+3점 → 5점)● 평가기준 이전과 동일
	100대 건설혁신 선도기업과의 협력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세부기준 마련- 우대 대상업체 명확화, 제출서류 등 세부 평가기준 마련
배점	재무지원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지원 인정유형 다양화

※ 각 평가항목별 세부 변경내용은 붙임 참조

붙임1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실적 (만점기준 상향)

□ 개정 내용

개정전(2021년 평가)	개정후(2022년 평가)
가점 +3점	가점 +5점

□ 2022년 평가기준

산정방법	평가기준			
	대기업	가점	중소기업	가점
$\frac{\text{② 시스템 활용 민간공사 현장수}}{\text{① 전체 민간공사 현장수}} \times$	70%이상	+5.0	60%이상	+5.0
	60%~70%미만	+4.0	50%~60%미만	+4.0
	50%~60%미만	+3.0	40%~50%미만	+3.0
$\frac{\text{④ 시스템 활용 임금·대금지급 개월수 평균}}{\text{③ 시스템 활용 임금·대금지급 현장의 총공사개월수 평균}}$	40%~50%미만	+2.0	30%~40%미만	+2.0
	30%~40%미만	+1.0	20%~30%미만	+1.0
	20%~30%미만	+0.5	10%~20%미만	+0.5

1) '전체 민간공사 현장수'의 판단기준 (기존과 동일)

- 건설공사 실적신고서 협회에 제출한 모든 민간공사 중 당년도에 기성실적이 발생한 현장수를 합산하여 산정
 - 단, 원도급 공사금액이 5천만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현장, 모든 하도급공사에 대해 공사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현장은 제외
 - ※ 자기건설공사 현장 중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는 현장은 포함

2) '시스템 활용 민간공사 현장수'의 판단기준 (기존과 동일)

- 1)에 따른 '민간공사 현장' 중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현장 내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을 모두 지급한 현장수를 합산하여 산정
- 1)에 따른 동일현장내 하도급기성이 발생한 모든 하도급공사에서 동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해 인정
 - ※ 다만 일부 하도급공사에 대해 동 시스템이 활용되지 않은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개별 소명하고, 사유를 검토하여 합리적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임금의 경우 매월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연 또는 일괄지급은 불인정
-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가 동 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 임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구성사도 동일하게 적용

3) '시스템 활용, 임금·대금지급 현장의 총공사개월수 평균'의 판단기준 (기존과 동일)

- 2)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공사현장'별 '공사개월 수*'를 모두 누계한 후 그 평균값으로 산정

* 건설공사 실적신고서 제출한 자료의 계약연월, 준공(예정)연월을 기준으로 계산 (최대 12개월)

4) '시스템 활용, 임금·대금지급 현장의 개월수 평균'의 판단기준 (기존과 동일)

- 3)에 따른 공사개월 중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실제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이 지급된 대상월(기성월) 수'를 합산하여 그 평균값으로 산정

※ 단,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대상월의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이 지급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동일현장내 다수의 하도급공사에서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임금 또는 자재장비대금이 최초로 지급된 하도급공사를 시작월로 하고, 마지막으로 지급된 하도급공사를 종료월로 각각 적용하여 개월수 산정

사실확인용 제출서류

- ㉠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화면캡처 출력물
(종합건설사업자명, 현장명, 임금지급 대상월, 월별지급일자 등 포함)
※ 신청사가 동의한 경우 시스템 운영사를 통해 협회가 직접 확인 가능
- ㉡ 현장별 월별 퇴직공제 납입 확인서 또는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현장근로자수 확인용)

⇒ 현장별로 ㉠, ㉡을 1set로 제출

2 100대 건설혁신 선도기업과의 협력실적 (신설)

□ 개정 내용

개정전(2021년 평가)	개정후(2022년 평가)
-	가점 +3점

□ 2022년 평가기준

산정방법	점수
100대 건설혁신 선도기업*과 공동도급 수행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한 경우	+3

1) '100대 건설혁신 선도기업'의 판단기준

-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건설혁신 선도 중소건설기업' 중 상호협력평가 가점이 지원되는 '국내시장 진출분야' 및 '스타분야' 지원업체로 선정된 업체
* 당년도에 건설혁신 선도기업으로써 효력이 있는 업체

2) 공동도급 수행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 등 협력한 경우'의 판단기준

- 당년도 협력업자 등록 후 해당 협력업자와 아래 형태로 협력한 경우,
 - ㉠ 당년도에 해당 협력업자와 신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해당 협력업자의 당년도 기성실적이 최소 1백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 인정
 - ㉡ 당년도에 해당 협력업자와 신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협력업자의 당년도 기성실적이 최소 1백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 인정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 계약을 기준으로 판단
- 자기건설공사에 대해 협력업자와 상기 형태의 협력관계가 발생한 경우 인정
- 공동이행방식인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실적은 구성사에게도 동일하게 인정

사실확인용 제출서류

- ㉠ 해당 협력업자와 체결한 공동수급협정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 ㉡ 해당 협력업자와의 전자세금계산서
⇒ 현장별로 ㉠, ㉡을 1set로 제출

※ 공동도급공사의 하도급인 경우 해당 공사의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추가 제출

3 재무지원 인정유형 삭제 및 신설

□ 변경 내용

재무지원 인정유형	변경전(2021년 평가)	변경후(2022년 평가)
협력업자에게 업체당 하도급대금외 1백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현물(기자재 등)을 지원한 경우	인 정	불인정(삭제)
동반성장펀드·상생펀드 등을 통하거나 신청사 자금으로 협력사의 대출을 지원(은행과 협력업사에 대한 대출 협약체결, 지급보증 등 포함)한 경우, 이자 지원금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	인 정(신설)

□ 2022년 평가기준

○ 재무지원한 협력업자수(또는 비율)를 평가 (배점 : 5점)

- 협력업체별 아래 ㉠~㉢ 중 한 개의 유형으로 최소 '1백만원 이상', '1회 이상' 재무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를 계산
- 하나의 협력업체와 다수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하나의 계약과 관련하여 해당 업체에 지원된 금액이 '1백만원 이상'이면 재정지원 업체수에 포함

재무지원 인정 유형													
㉠	발주자로부터 선금금, 기성금, 준공금 등 공사대금을 전혀 수령하지 않고 1백만원 이상 하도급대금을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선(조기)지급한 경우												
㉡	전자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인지세액 중 70%이상을 신청사가 부담한 경우로서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된 협력업자의 인지세 지원금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인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의 총 하도급계약액 기준으로 지원 인정(합계)금액이 1백만원 이상 경우 대표사 및 구성사 모두 재무지원 인정												
	<table border="1"> <thead> <tr> <th>하도급계약액</th> <th>지원 인정금액</th> </tr> </thead> <tbody> <tr> <td>1천만원 이상</td> <td>6만원</td> </tr> <tr> <td>3천만원 이상</td> <td>12만원</td> </tr> <tr> <td>5천만원 이상</td> <td>20만원</td> </tr> <tr> <td>1억원 이상</td> <td>50만원</td> </tr> <tr> <td>2억원 이상</td> <td>100만원</td> </tr> </tbody> </table>	하도급계약액	지원 인정금액	1천만원 이상	6만원	3천만원 이상	12만원	5천만원 이상	20만원	1억원 이상	50만원	2억원 이상	100만원
하도급계약액	지원 인정금액												
1천만원 이상	6만원												
3천만원 이상	12만원												
5천만원 이상	20만원												
1억원 이상	50만원												
2억원 이상	100만원												
㉢	하도급계약이행보증을 면제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된 협력업체별 수수료 등 지원금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인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의 총 하도급계약액 기준으로 지원 인정금액이 1백만원 이상 경우 대표사 및 구성사 모두 재무지원 인정												
	<table border="1"> <thead> <tr> <th>하도급계약액</th> <th>지원 인정금액</th> </tr> </thead> <tbody> <tr> <td>4천만원 이상</td> <td>12만원</td> </tr> <tr> <td>5천만원 이상</td> <td>20만원</td> </tr> <tr> <td>1억원 이상</td> <td>50만원</td> </tr> <tr> <td>2억원 이상</td> <td>100만원</td> </tr> </tbody> </table>	하도급계약액	지원 인정금액	4천만원 이상	12만원	5천만원 이상	20만원	1억원 이상	50만원	2억원 이상	100만원		
하도급계약액	지원 인정금액												
4천만원 이상	12만원												
5천만원 이상	20만원												
1억원 이상	50만원												
2억원 이상	100만원												
㉢	동반성장펀드*·상생펀드* 등을 통하거나 신청사 자금으로 협력사의 대출을 지원(대출이자 지원, 무이자 대출지원)한 경우, 이자 지원금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 따라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기금 집행·관리)												